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5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8.

발 의 자 : 김동아 · 임오경 · 황명선
최혁진 · 박민규 · 박균택
염태영 · 이건태 · 문대림
이주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 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를 “2028년 12월 31일”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기적인 투자 외 중장기적인 투자를 유인하고,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감면기한을 현행 “2028년 12월 31일”에서 “2033년 12월 31일”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8년 12월 31일”을 “203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